

자격 관련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규 자격과정 외에 교류분석에 관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열린 학회로서의 역량을 결집, 강화하기 위한 특례자격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가 인정과정) 본 학회 수련과정을 받지 않은 교류분석 전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요건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규정생략 : 규정집 참조)

제3조 (타 분과자격취득) 본 학회의 한 영역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 학회 다른 영역의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 영역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영역의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각 영역별 기본 수련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1>
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2>
3.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3>
4.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4>
5.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5>
6.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6>

제4조 (공통인정) 상담-교육-조직영역에서 개최하는 교육이나 포럼, 교육위원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자격수련규정의 월례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교육영역 자격특례규정】

<표1>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또는 조직영역 Trainer는 아래와 같이 8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1,2단계 교육	각 8시간	16시간	
2. 실습	교육현장 실습		24시간	교류분석상담사 1~3단계 코리더 참여 경험, 교육현장 경험 포함
3. 전문가 이론수업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이론 수업		30시간	교육전문가 이론 수업 및 수퍼비전 (수업내용 별첨)
4. 월례회 발표 및 수퍼비전	본인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지부 월례회에서 발표 및 수퍼비전	1회	10시간	지부 월례회에서 진행하며 2인 이상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는다. (1회 10시간 인정)
총 이수시간	80시간			

<표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또는 조직영역 Master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8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1~5단계 교육	각 8시간	총40시간	
2. 실습	교육현장 실습		총100시간	전문가 이론 수업 포함
3. 집단프로그램 집단 수퍼비전	집단 수퍼비전	2회	총40시간	집단프로그램 집단수퍼비전 1회 필수 (수퍼바이저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개발 혹은 진행한 프로그램을 집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수퍼비전을 받는다(1박 2일 20시간 인정) * 타인이 진행한 프로그램 발표 2회 참석
총 이수시간	180시간			

【조직영역 자격특례규정】

<표3>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조직영역 Trainer 수련규정

상담영역 또는 교육영역의 교류분석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102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조직영역 Traine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기본 수련시간
1. 교육	1~3단계(단계별 16시간씩)	48시간
3. 포럼	포럼 참석 2회 (포럼 1회 2시간 인정)	4시간
5.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1건	40시간
6. 교육시연	1회 (1회 10시간 인정)	10시간
총 이수시간	102시간	

<표4>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수련규정

상담영역 또는 교육영역의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178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기본 수련시간
1. 교육	1~3단계(단계별 16시간씩)	48시간
2. 포럼	포럼 참석 (포럼 1회 2시간 인정)	10시간
3.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1건	120시간
총 이수시간	178시간	

【상담영역 자격특례규정】

<표5>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또는 조직영역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0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1, 2단계 교육	각 8시간	16시간	
2. 실습	상담자 경험		32시간	
3. 개인상담 (수퍼비전)	개인 수퍼비전	10시간	26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 : 최소 3사례 이상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내담자 경험	10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집단 수퍼비전	1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 : 1사례 -인정시간 : 1시간
	집단 수퍼비전 참가	5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참가자 : 5회 이상 참석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4. 집단상담	집단원 경험		24시간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 집단원 경험 30시간
5. 지부 사례발표	지부 사례발표	1회	2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총 이수시간	100시간			

<표6>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또는 조직영역 Master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59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수퍼비전 교육	6시간	-수퍼비전 이론과 설계교육	
2. 실습	상담자 경험 100시간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5시간	105시간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3. 개인상담 (수퍼비전)	개인상담 수퍼비전	20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 이상 진행) -사례 수 : 최소 3사례 이상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4. 집단상담 코리더 경험	집단상담 코리더 경험	24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진행	
5 기타요건	지부 사례발표	1회	2시간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학회 사례발표	1회	2시간	학회사례발표는 10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총 이수시간	159시간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정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수련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